

해양수산부는 3월26일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등사무처리요령을 개정고시했다. 신·구 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.

[신·구 조문 대비표]

현 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특수여객선”이라 함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 정한 특수형태의 여객선으로서 최대항속 30노트이상인 선박을 말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제3조(면허심사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의한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시 심사할 사항 중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확인케 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에는 -----한다. 다만 국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삭 제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면허심사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의한 외항여객 및 기타해상 여객운송사업 (이하 “여객운송사업”이라 한다)의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에는 -----.</p> <p>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외항여객운송사업의 수송수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수송수요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여객운송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여객운송사업계획서상 수송능력의 30% 이상의 수송수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</p> <p>2.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여객운송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여객은 수송능력의 30% 이상, 화물은 수송능력의 10% 이상의 수송수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</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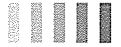
현행	개정안
<p>제4조(면허기준 대상선박) 규칙 제5조의 별표1 비고2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 사업의 면허기준상의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여객선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</p> <p>4. ~ 5. (생략)</p> <p>제5조(선령의 적용기간 연장) ① 외항여객운송사업자가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-----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1년 단위로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검사기관(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한국선급)으로부터 감항성 등 안전항행 검사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신설>제7조</p>	<p>제4조(면허기준 대상선박) 규칙 제5조의 별표1 비고2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상의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여객선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을 한 자 -----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선령의 적용기간 연장)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-----</p> <p>② ----- 정부검사 대행기관(한국선급 또는 선박검사기술협회)이 발행한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)</p> <p>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휴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운항수지 악화 등 신청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여객운송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연간 휴업기간은 천재·지변,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.</p>
<p>제9조(외국인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개시 협의) ① 외국인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권한 있는 정부</p>	<p>제9조(외국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개시 협의) ① ----- 여객운송사업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기관이나 공식적인 협의창구를 통하여 항로개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의2(외항정기여객항로개설관련 업무협의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정기여객항로 개설을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, 보건복지부, 관세청 등 출입국 관련부처(청)와 여객 및 화물의 통관 등의 수용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개설과 관련하여 여객터미널 확보 등 항만운영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선박기항 예정지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항만의 출입국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검사·보고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사업자는 영 제13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월별 국제여객수송실적(익월 20일까지) 2. 반기 및 연간 국제여객수송실적 총괄표,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반기 및 연간 결산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) <p>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종합보고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등록의 구분) ① 외항화물운송 사업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의 등록은 정기와 부정기로 구분하여 등록한다.</p> <p>②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의 경우에 보유하여야 할 선박은 컨테이너선(세미컨테이너선 포함)에 한한다.</p>	<p>제9조의2(외항여객항로개설관련 업무협의)</p> <p>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외항여객항로 ----- 법무부, 보건복지부, 농림부, 관세청 등 출입국 관련기관(이하 "출입국 관련기관" 이라 한다)과 -----.</p>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개설과 관련하여 접안시설과 여객터미널 확보 및 여객과 화물통관 수용태세 등 -----.</p> <p>제10조(검사·보고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여객운송사업자는 ----- 지방해양수산청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(익월 15일까지) 2. 연간 ----- (연간 -----) <p>③ ----- 규정에 의하여 실적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-----.</p> <p>제11조(등록의 구분) ① 법 제27조 및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중 수산물외의 화물운송사업 등록은 정기와 부정기로 구분하여 등록한다.</p> <p>② <삭제></p>

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등록기준 대상선박) ① 규칙 제19조의 별표2 비고2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(이하 “등록기준” 이라 한다)상의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선박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</p> <p>4. ~ 5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21조(사업계획의 변경신고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3조(등록기준 대상선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을 한 자로부터 선박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폐업신고) ① 사업자가 등록기준 미충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서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20조의2(보고·검사등) ① 사업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 단체를 경유하거나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연간 수송실적 및 운임 수입 현황 총괄표(익년 1월30일까지)</p> <p>2. 사업경영 연간 결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연간 결산 확정일로부터 20일이내)</p>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21조(사업계획의 변경신고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선박 휴항(여객운송사업에 한한다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제2호이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2조(용선선박의 관리)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·화물운송사업자가 신고한 2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용선한 선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 명세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.</p> <p>제26조(내항운송사업자의 일시적인 외항운송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)</p> <p>① 내항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3국간 여객·화물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항여객·화물의 운송시마다 규칙 제10조·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별로 사업계획변경신고사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하며 연간 누적 사업계획변경일수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해 사업자의 외항운송사업계획서 사본 2. 과거 2년간 당해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목록 ③ 선박별 연간 누적 사업계획변경 일수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·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외항운송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. <p>〈신설〉</p>	<p>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</p> <p>제22조(용선선박의 관리)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- - - - -.</p> <p>제26조(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신고)</p> <p>① 규칙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한 기간의 산정은 대상선박이 외항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내항을 출항한 날부터 입항한 날까지로 한다.</p> <p>② 규칙 제1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, 석유화학제품, 대형구조물, 시멘트를 말한다.</p> <p>③ 규칙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신고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별로 일시적 운송기간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, 연간 누적 운송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해 사업자의 외항운송사업계획서 사본 2. 과거 2년간 당해 사업자에 대한 사업 계획변경신고 목록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선박별 연간 누적



현 행	개정안
<p>제29조(보고·검사등) ① 사업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 단체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월별 선박 운항실적 (익월 20일까지) 2. 반기 및 연간 선박운항실적 총괄표,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반기 및 연간 결산 확정일로부터 20일이내)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31조(불공정행위 조사절차등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한국선주협회(한국근해수송협의회) 회장은 외항운송사업자(사업구역을 일시 변경하여 외항 화물을 운송하는 내항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)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당해 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한국선주협회장은 자율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③ 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운송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외항운송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제29조 <삭제></p> <p>제31조(불공정행위 조사절차등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현행과 같음) ② 한국선주협회장은 외항운송사업자 (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 신고를 한 내항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)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제26조제2항의 화물중 대형구조물, 시멘트는 2005년 12월말까지 적용한다.